

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신규모집 공고

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8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시설 개요

- (시설명)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
- (소재지) 용산구 서빙고로 17(한강로3가 63-70) 4층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
- (창업보육공간 구성)
 - 운영사무실 1실 / 소회의실 3실 / 교육실 1실 / 커뮤니티 공간 1실

면적		2인실	4인실	개방형 공간 (11인 공용, 총 52.38㎡)
전체	전용			
710㎡	513.6㎡	10실 (134.51㎡) (실별면적 약 13.4 ㎡)	7실 (140.69㎡) (실별면적 약 20㎡)	11석

2. 모집 개요

- (추진목적) 지역(용산구)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, 멘토링, 네트워킹 등 보육 지원
- (모집대상) 우수한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모집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
- (모집규모) 2개 기업(팀)

구분	독립 공간		개방형 공간 (11인 공용, 총 52.38m ²)	합계
	2인실(실별 13.4m ²)	4인실(실별 20m ²)		
모집규모	-	2개 기업	-	2개 기업

- ※ 입주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배정 예정
- ※ 차점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여 공실 발생 시 입주기회 부여
- ※ 입주 적격자 없을 경우 입주팀 미선정 가능

- (지원내용) 창업공간 지원,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

구분	구분	연간임대료	보증금 (입주시 납부)	* 관리비	주차료
독립 공간	4인실	1,539,400원 (2025년기준)	72만원	실별 부과	유료 (입주자부담) ※할인권 지원

- * 관리비는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. 추후, 캠퍼스타운사업 지침의 변동에 따라 연중에도 변경(중단)될 수 있음.
- ※ 연간임대료 및 보증금은 물가상승 등 변동요인에 따라 입주계약시마다 변동될 수 있음.
- ※ 주차요금은 사용자 본인 부담(유료)으로 하며 매달 할인권을 구매하여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음.

- (입주기간)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

- ※ 입주계약 만료시점 도래 시 연장평가를 통해 입주여부 결정, 최대 2년 입주 가능
- ※ 입주자는 향후 센터의 각종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시설물 사용에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
- (입 주 일) '25. 6월 중 (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)

3. 세부지원 내용

구 분		지원 내용
① 사무공간 지원		기본 1년, 연장평가를 통해 최장 2년까지 입주공간 이용
② 프로그램 지원*	멘토링	사업전략, 기타 전문분야 멘토링 제공
	네트워킹	창업자와 전문가, 창업자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
	투자IR	투자유치 교육 및 투자IR 대회 등 개최

*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시행중인 '2025년 서울 캠퍼스타운' 사업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며, 추후 캠퍼스타운사업 지침의 변동에 따라 연중에도 변경(중단)될 수 있음.

(사무공간 지원) 기본 1년, 최장 2년까지 사무집기(책상 및 의자) 무료이용

* 사무실 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, 4층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

** 캐비닛, 의자 등 기업별 소정의 사무비품 외 별도 창업공간(창고, 탕비실 등) 지원 불가

(프로그램 지원) 멘토링, 네트워킹, 투자유치IR 등

- (멘토링)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전략, 기술개발, 투자, 마케팅, 홍보 등에 대한 개별·집단 코칭 지원
- (네트워킹) (예비)창업자 및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네트워킹의 장 마련
- (투자유치IR) 투자유치 교육, 투자IR 대회 개최 등을 통한 투자자와의 접점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

4. 지원자격

- (신청자격) 입주모집일('2025. 5. 7. 기준) 현재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※ ① ~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※

① 19세 ~ 39세 청년의 대표자

- ☞ 입주모집일('25.5.7.) 현재 대표자 연령 기준
- ☞ 공동대표,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 ②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②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모집일 현재 창업 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- ☞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
- *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

③ 사업자 등록지를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로 등록 및 이전 가능한 자

- ☞ (예비창업자)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, (기창업자) 입주 후 2개월 내 소재지 이전 완료 필수
- ☞ 모집일('25. 5. 7.) 현재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용산구민 서면평가 가점 부여

-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-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②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또는 기업
- ③ 휴업 중에 있는 자 또는 기업
- 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자
- ⑤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
- ⑥ 환경오염 유발, 사행성 아이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및 업종
- ⑦ 기타 용산구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-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
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카지노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)

5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

- (모집기간) 2025. 5. 7.(수) ~ 5. 9.(금) 18:00
- (신청방법) 방문접수 (접수처 :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)

○ 제출서류

구비서류	비고
① 입주승인신청서	별도 첨부 양식 (한글파일로 제출)
② 사업계획서	별도 첨부 양식 (한글파일로 제출)
③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	별도 첨부 양식
④ 사업자 등록 및 이전 약약서	별도 첨부 양식
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	대표자에 한함 * 모집공고일('25.4.28.) 이후 발급분
⑥ 사실증명원	☞ 예비창업자의 경우,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발급 ☞ 기창업자의 경우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발급 * 모집공고일('25.4.28.) 이후 발급분 *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가능
⑦ 사업자등록증	해당 소지자에 한함 ☞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입주신청 해당 기업 포함 전체 사업자 등록증 제출
⑧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	해당 소지자에 한함 * 모집공고일('25.4.28.) 이후 발급분
⑨ 국세납세증명서	☞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: 개인 명의 ☞ 법인사업자: 법인 명의 * 모집공고일('25.4.28.) 이후 발급분
⑩ 지방세납세증명서	☞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: 개인 명의 ☞ 법인사업자: 법인 명의 * 모집공고일('25.4.28.) 이후 발급분
⑪ 벤처기업확인서, 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등록증 등 성과자료(소지자에 한함)	해당 소지자에 한함

6. 평가방법 및 절차

- (선정절차) 선정 단계는 ①서면평가, ②PT 발표평가, ③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, 발표평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

<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창업팀(기업) 모집·선정 절차 >

모집·접수 (일자리정책 담당관)	→	요건검토 (일자리정책 담당관)	→	서면평가 (전문평가단)	→	발표평가 (운영위원회)	→	결과통보 (일자리정책 담당관)	→	계약체결 및 입주
5. 7.(수) ~ 5. 9.(금) 18시		5.12(월)~ 5.13(화)		5.14.(수) ~5.16.(금)		5. 26. (월)		5. 29. (목)		2025. 6월 중

* 상기 일정은 대·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- ① (요건검토 및 서면평가) 입주기업 자격요건 검토,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4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 선발

* 신청기업 수가 발표평가 대상기업 수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< 서면평가 평가항목(안) >

평가항목(안)		
1	창업의지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창업자 및 직원 역량 ■ 사업계획서 충실도 ■ 사업 경험 및 추진 의지 등
2	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의 구체성, 현실성, 확장성 ■ 사업 환경 분석의 이해도 ■ 사업아이템 차별성 ■ 시장에서 매출 및 수출발생 가능성
3	기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 분야 핵심기술 보유 ■ 제품 및 기술의 기술수준, 품질, 성능 (특히, 인증 등 보유 여부) ■ 제품 및 기술의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

② (발표평가) 대면방식의 사업계획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10분 내외 발표평가 실시 (5분 발표, 5분 질의응답 예정)

* 신청업체가 모집예정 업체 수 이상일 경우 공실대비 예비 입주자 선정

< 발표평가 평가항목(안) >

평가항목(안)		
1	창업의지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창업자 및 직원 역량 ■ 사업계획서 충실도 ■ 사업 경험 및 추진 의지 등
2	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의 구체성, 현실성 ■ 사업 환경 분석의 이해도 ■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및 확장성 ■ 사업아이템 차별성 ■ 시장에서 매출 및 수출발생 가능성
3	시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목표 시장 이해 및 경쟁자 분석 ■ 사업아이템 시장 반응 ■ 사업아이템 확장 가능성 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
4	기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 분야 핵심기술 보유 ■ 제품 및 기술의 기술수준, 품질, 성능 (특허, 인증 등 보유 여부) ■ 제품 및 기술의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
5	공간지원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동기 및 창업공간 활용계획의 타당성

③ (운영위원회 개최 및 최종선정) 발표평가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,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주승인 및 개별 통보

* 미선정된 70점 이상 기업에 예비후보기업의 자격을 부여 하며, 공실 발생 시 별도안내

7. 유의사항

□ 발표평가 시 예비창업자(팀) 본인(대표),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리 참석 시 용산구청 사전연락 필수

□ 예비창업자(팀)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산청년창업 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□ 기 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실로 변경하여야 함

* 기한 내 사무실 주소 변경 불이행 시 퇴거 조치 가능

** 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4층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

□ 예비입주기업 선정 대상자의 자격은 최종 선정 안내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, 공실 발생 시에만 입주할 수 있음

□ 최종 선정된 기업의 입주계약시 센터운영규칙에 관한 관리규정이 별도 안내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내 준수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

□ 최종 선정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 발견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중도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

-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의 기재, 부적격사유가 발견된 경우
- 지정된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및 계약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- 사업계획서상 정상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
- 입주계약상 권리 등이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
- 휴·폐업한 경우
-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
-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는 경우
-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
-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
- 센터 운영관리규정 위반(음주, 기물파손, 소음공해 발생 등)으로 3회 이상 경고제재 받은 경우 등
- 계약 후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(매출실적 등)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연장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

8. 문 의 처 :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담당 장성길 (☎ 02-2199-4515)